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 됩니다

기존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24. 1. 27.부터 확대 시행 됩니다.

도내 5인 이상 사업장을 운영중인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라북도 중대재해 예방 지원센터 ※

- 대 상 도내 5인 이상 사업주 및 전라북도 도민
- 내 용 ① 20여 개의 업종별 법적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안내
② 위험성평가 실시방법 및 작업 전 안전교육 활동 점검표 제공
③ 공정별 유해 위험요인 사례 전파 등
- 연락처 ☎ 063) 280- 2782,2783

전라북도는 도내 중대재해 발생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

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2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3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조치

4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 예산 편성 및 집행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전문 인력 배치

7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점검

8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9 도급, 용역, 위탁 평가기준·절차 및 관리비용, 업무수행기관 관련 기준 마련·이행 여부 점검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5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산업보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

평가·관리
반기 1회 이상
(업무 수행 수준 평가)

점검 반기
1회 이상
(3, 7, 8, 9)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4조제1항제2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4조제1항제3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법 제4조제1항제4호)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2 인력 배치 및 예산 추가 편성·집행 등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

3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의 실시 여부를 점검

4 미 실시 교육에 대한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

점검 반기
1회 이상
(1, 3)